

정정신고(보고)

2024년 7월 19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신탁계약서

삼성 한국형 TDF 2015 증권투자신탁H[채권혼합-재간접형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6년 4월 1일

3. 정정사유

- 목표 환헤지 비율 정정
- 법개정사항 반영 등

4. 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	비 고
제1조 (목적 및 종류 등)	③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달러화를 활용한 원화-달러화 환헷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통화의 펀더멘탈, 시장상황, 헷지수단 및 헷지대금의 규모 등의 영향으로 투자 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. 또한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	③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달러화를 활용한 원화-달러화 환헷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통화의 펀더멘탈, 시장상황, 헷지수단, 헷지대금의 규모 및 국가 간 금리차에 따른 FX 스왑포인트(프리미엄, 디스카운트) 등의 영향으로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. 또한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거나 환헷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.	
제38조 (운용 제한)	②제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	②제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	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	비 고
	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으로 본다.	
부칙	(신 설)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. (목표 환헤지 비율 정정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)	